



제400회국회(임시회)
제2차 정무위원회

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시·도지사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및 조사 권한 부여〉
■ 송재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115065호)

2022. 9.

정 무 위 원 회

전문위원 곽 현 준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송재호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2. 4. 4.
- (3) 회 부 일 : 2022. 4. 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,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·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(안 제17조의2 및 제20조).

Ⅲ. 검토의견

- **현행법**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제17조¹⁾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·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.

개정안은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조사 권한을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.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17조의2(시정 조치) ① <u>공정거래위원회</u> 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	제17조의2(시정 조치) ① <u>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1) 「**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**」 제17조(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)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(이하 “불공정약관조항”이라 한다)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<u>공정거래위원회</u>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신 설> 제20조(조사) ① (생 략) <신 설>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	③ <u>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시·도지사는 권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제20조(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·도지사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③ 제1항 또는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○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에 필요한 약관 조사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사

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바로 잡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임.

○ 시·도지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,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경우 통신·운송 서비스 등 전국적인 범위의 사업 및 유사한 업종·사안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약관 심사가 어려워지는 점,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에 필요한 약관 조사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○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업종·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·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약관의 유·무효 판단이 상이해질 수 있어 법집행의 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,²⁾

약관법 위반 판단 시 불공정성 여부³⁾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

2) 약관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약관 심사가 필요하거나, 당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됨(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약관 심사가 필요한 분야는 통신, 방송, 운송, 상품권, 택배 등이 있고, ②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오픈마켓, 플랫폼, 금융·보험 등이 있음.)

3) 업종의 특성·거래관행, 거래대상 상품·용역의 특성, 관계법령, 사업자와 고객간 이익 비교형량, 민·상법 법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.

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시정권고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⁴⁾

문 의 처
02) 6788-5115

4) 공정거래위원회(약관심사과)도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수시로 약관심사자문위원회(현직 판사 3명,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명, 변호사 1명 총 12명으로 구성)의 자문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.